

생산일 : 00. 10. 10

報 道 資 料

이 자료는 2000년 10월 10일 국무 회의(10:00)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「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추진」 등

-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위하여 “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”을 2000. 10. 10. 10:00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, “공적자금위원회 설치·운영안”을 보고하였음
- 보증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의결된 내용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등 향후 필요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,
- 공적자금위원회의 경우에도 “공적자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안(대통령훈령)”의 제정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예정임

<별첨 1> 공적자금 추가조성관련 설명자료
<별첨 2> 공적자금위원회 설치·운영안

보도자료 생산과 :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(☎ 500-5341)
국 고 국 국 고 과 (☎ 500-5381)

재정경제부 공보관

< 별첨 1> 공적자금 추가조성 관련 설명자료

1. 공적자금 사용규모

-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전액사용
 - 64조원중 회수된 자금 18.6조원, 공공자금 27조원 등을 투입함으로써 8월말 현재 총 109.6조원을 지원
 - * 공적자금 사용실적(회수분 재사용 및 공공자금 포함)

(단위: 조원)

정부보증채권발행자금					공공자금	총계
예금보험기금	부실채권상환기금	소계	회수자금	계		
43.5	20.5	64.0	18.6	82.6	27.0	109.6

2. 공적자금 추가조성 배경

- 지난 5월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소요액을 30조원으로 산정하고 기투입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
 - 대우그룹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처리소요 증가,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은행클린화, 종금·금고·신협의 추가정리에 따른 지원소요가 증가한 반면,
 - 자금의 회수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이루어짐으로써 자금부족이 발생
 - 또한,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, 금융기관의 가치를 제고하여 자금회수를 극대화 함으로써 국민의 최종부담을 줄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조성을 검토하게 된 것임

3. 공적자금 추가조성내역

- 현재 시점에서 공적자금의 예상 소요는 50조원으로 추정
- 이중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자산 매각,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10조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자금은 40조원 수준으로 추산
 - 당초소요 증가: 은행클린화에 따른 소요*, 서울보증 출자*, 금고·신협 구조조정 등
 - * 향후 기업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를 감안하였음
 - 신규발생: 수협·농협 출자, 산은·기은의 투신출자지분 매입 등
 - 자체 조달이 어려운 40조원에 대하여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임

* 추가조성자금 내역(소요 세부 내용 별첨)

(단위: 조원)

구 分		추정규모	사 유
기 발 생 요 인	①구조조정대상 은행에 대한 출자 지원	6.1	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은행 6개 BIS비율 10%유지 등
	②서울보증보험 출자	8.3	대우자동차 매각지원 및 위코아웃 손실 등
	③보험사, 금고·신협 추가구조조정	6.9	
	④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·대투 출자, 제일은행 봇백 등	20.1	
	⑤수협·농협 출자	1.7	
	⑥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가 충당금 적립 지원	1.0	
	⑦한아름종금 손실보전, 산은·기은의 투신출자지분 매입 등	4.4	
	⑧2001년 만기채권상환	1.5	
계		50.0	
자체조달		10.0	파산재단 배당, 보유자산 매각, 보유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 등
부족자금(추가조성)		40.0	

◇ 보증동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◇

(제안이유)

- 금융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,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

(주요골자)

- 채무자 : 예금보험공사
- 채권자 :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유자
- 발행액 : 40조원 이내(채권의 조건변경등을 위해 채권을 소각하고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행액이 40조원을 초과하더라도 40조원의 범위내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)
- 보증액 : 채권의 원리금
- 발행금리 :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결정
- 상환기간 : 채권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

4. 공적자금의 지원원칙과 향후 과제

-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은 신속성, 투명성, 공정성의 원칙하에 지원
 - 우선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,
 - 엄격한 기준하에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고, 정확한 실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정하는 한편,
 - 이해관계자가의 공정한 손실분담과 철저한 자구노력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
 -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
-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책임 추궁노력*을 더욱 강화
 - * 8월말 현재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2,103명 문책, 1,009명 형사고지, 721명에 대해 3,9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중
 - 특히,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주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금감원, 예보, 국세청, 검찰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
 - 법률개정을 통해 예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하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(예금자보호법 개정)하는 한편,
 - 내부자거래, 부실회계처리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금감위의 조사권한도 강화(증권거래법 등 개정사항)할 계획임

공적자금소요 세부내역

가. 구조조정대상은행에 대한 출자지원

: 6.1조원

- 구조조정대상은행의 클린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원
소요

- 지원기준은 “고정이하 여신비율을 6%수준으로 축소”하고, “BIS비율 10% 유지”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

- BIS비율 10%달성을 위한 증자소요: 3.1조원 — 6.1조원*
 - 고정이하 여신 정리에 따른 증자지원: 3.0조원 —

*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나. 서울보증보험(주) 출자

: 8.3조원

- 대우 회사채 대지급소요 5.3조원, 비대우 워크아웃기업 회
사채 대지급 및 대우계열사 재무구조 악화시 대지급 추가소요
3조원

다. 보험사, 상호신용금고·신용협동조합 추가 구조조정 : 6.9조원

- 2000.9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%에 미달하거나
향후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생·손보사는 10개사 정도이며
- 이들 보험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순자산
부족액은 약 1조원수준으로 추정
- 영업정지중이거나 재무건전도가 취약하여 추가퇴출될 것으로
예상되는 부실금고 및 신협의 대지급소요를 5.9조원수준으로
추정

라. 종금사 정리관련 지원

: 9.0조원

- 폐쇄 종합금융회사의 콜차입금 상환 : 4.0조원

-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: 3.0조원

○ 지난 5월 인가취소된 나라종금의 예금대지급 금액

- 4개 부실 종합금융회사(영남, 한스, 한국, 중앙) 정상화지원: 2.0조원

마. 한국투자신탁증권(주) · 대한투자신탁증권(주)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상환 : 5.2조원

- 2000년 6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출자는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했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소요로 원금 4.9조원과 차입금에 대한 만기시점까지의 이자 0.3조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

바. 제일은행 잔류자산에 대한 사후 손실보전(put-back) : 5.9조원

사. 수협중앙회 · 농협중앙회 출자지원 : 1.7조원

-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에 따른 소요(1.2조원)와 농 · 축협 통합에 따른 축협 결손 보전(0.5조원) 소요 반영

아. 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충당금 적립 지원 : 1.0조원

- 현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정상기업 중 일부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된다고 가정할 때 금융권에 미치는 평균적인 손실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소요로 산정

자. 한아름종금 손실보전

: 1.0조원

- 2000년 말로 예정된 한아름종금 해산시 한아름종금의 배당금 및 보유자산 매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융기관 미지급 예금 및 해외채무 미해결 규모에 대한 보전이 필요

차. 산업은행·기업은행의 투신사출자지분 매입 : 1.9조원

-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한 한투주식과 대투주식을 양 투신사가 전액 매입하여 소각하고 예보가 동일한 금액(1.9조원)을 출자하는데 따른 소요

카. 대한생명 출자

: 1.5조원

- 대한생명의 조기정상화를 도모하고 특히 공개매각시 순자산 부족분을 일시에 보전해줌으로써 차분의 가치를 높이고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필요

- 순자산부족액(3.5조원) 중 지원되지 않은 부분을 지원: 1.5조원

타. 2001년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 : 1.5조원

- 2001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발행

-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 상환되어 소각되므로 전체 채권발행 규모는 늘어나지 않게 됨

< 별첨 2 > 공적자금위원회 설치·운영안

1. 배경

-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·공정성·객관성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
- 공적자금과 관련된 심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에 민관합동의 「공적자금위원회」를 설치

* “공적자금 추가조성”과 관련하여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사항
('00.9.22)임

2. 위원회 설치·운영안

□ 위원회 구성(12인)

- 위원장(2인) : 재경부장관, 경제관련 민간전문가
 - 위원(10인)
 - 기획예산처장관,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, 예금보험공사사장,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
 - 경제에 관한 학식(學識)과 경험이 있는 자(6인)
- * 은행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,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및 민간 경제 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계획

□ 위원회의 주요 기능

-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필요적 심의 기능을 수행
- 주요 심의 대상
 - 공적자금의 조성 및 사용·회수에 관한 중요 사항
 - 공적자금 지원 대상기관의 선정원칙과 기준
 - 공적자금 지원시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지원원칙
 -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 등
 -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
 -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시스템
 -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 등
 - 공적자금 관련 법령·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공적자금 백서 발간에 관한 중요 사항
 - 기타 공적자금운용의 효율성제고와 관련된 중요사항

□ 공적자금의 범위

- 국회 보증동의를 받은 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국유재산,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까지 포함

□ 위원회의 존속시한

- 정부 보유주식의 매각방향을 결정해야 할 2002년 말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일몰제 도입